

위험

부정수급 사이렌

‘외부 중고설비를 기존 사용설비로 둔갑’시키는 “부정당행위”

[CASE] 위험사례

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일부 사업장이 “공정에 없던 설비를 외부에서 매입·배치”하려는 시도 등 허위·거짓 위험 분위기 감지

→ 외부 중고 설비를 마치 자사 공정에서 계속 사용하던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“범죄”

[SCHEME] 부정수법

1. 제작·판매업체 또는 서류대행 업체와 결탁
2. 사업 신청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중고 기계 매입
3. ‘기존설비 사용 확인 및 폐기 약속서’ 및 ‘기존 기계·설비 폐기 예정 약속서’를 거짓으로 작성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제1호(거짓·부정)에 해당

[RISK] 행정처분

- (환수)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
- (추가환수) 지급된 보조금의 5배
- (참여제한)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
- (형사고발) 보조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(사기)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
<부정수급 신고방법>

-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